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568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음 담당변호사 한창완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가소191487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23.부터 2025. 10. 1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C"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출판하였다.

나. D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피고 소개란에는 피고의 연구업적으로 이 사건 논문의 공동저자임이 표시되어 있다.

다. D병원 병리과 교수인 E은 2025. 1. 10. '이 사건 논문의 제1저자는 원고, 책임저자는 E이고, 공동저자로 등재된 피고, F 등은 연구 설계, 실험, 논문작성, 출판 등의 과정에 어떠한 기여나 관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¹⁾

라. 피고는 일자 불상경 병리과 교실 구성원들에게 'G단체이 주관한 논문 출판 과정에서 연구윤리 교육 중 표절과 저자 자격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간 주임교수로서 공저자에 포함되는 관행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오던 차에 교실원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 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E이 피고와 같은 대학, 병원의 교수로 실명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E은 주임교수 선출 문제로 피고와 갈등을 빚고 불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사실확인서는 믿을 수 없다.'는 피고 주장만으로는 E의 사실확인서를 배척하기 어렵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논문에 피고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저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교육부 훈령 제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규정한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에 해당하고, D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논문을 자신의 연구업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것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논문에 허위의 저자로 등재됨으로써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원고의 기여 비율이 낮아지는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1) 이 사건 논문에 관하여 피고가 연구 설계, 실험, 논문 작성 등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D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자신의 연구업적 란에 이 사건 논문의 공동저자로 게시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논문의 책임저자인 E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저자로 등재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



나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불법행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를 있었다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 16031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논문의 책임저자인 E이나 제1저자인 원고가 동의하여 피고가 공동저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논문 작성 당시 D병원 병리학교실 주임교수 및 D병원 병리과 과장으로서 원고가 연구의 검체 데이터를 축출하고, 병원 기자재와 임상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도왔고, 논문 출판에 앞서 최종본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여 이 사건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논문의 저술이나 실험을 지도, 감독하고 조언하는 것만으로는 창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처럼 '주임교수로서 연구의 검체 데이터 축출과 병원 기자재 및 임상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도왔고, 논문 출판에 앞서 최종본을 승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 자체로 이 사건 논문의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저작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 6. 10. 국민신문고에 '피고는 자신의 연구업적으로 병원 홈페이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으므로, 2019. 6. 10.경에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9. 6. 10. 이 사건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24. 6.경 이 사건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0. 19. H단체에 피고에 대하여 진정을 할 때 다른 논문들은 적시하면서도 이 사건 논문은 빠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그보다 앞선 2019. 6. 10.경에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 주장처럼 다른 저자가 더하여 짐으로 이 사건 논문에 원고의 기여 비율이 낮아지는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저자가 아님에도 피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논문의 저자로 등재하여 원고의 저작인격권 등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들의 논문에 저자로 편승하는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과 이 사건 논문의 분량과 공동 저자의 수, 피고가 원고의 지도교수였고 논문 작성과정에 조언이나 지도 등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학술적·전문적인 이 사건 논문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읽히거나 판매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3,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 10.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신영희

 판사 정인재